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4
------	------

2021. 9. 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9. 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민간과 공동으로

유망산업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펀드조성을 위한 기금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나. 추진방향

- 전문운용사를 활용하여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지원
-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활용

다. 출자의 필요성 : 코로나19의 여파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출자분야	출자 필요성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여 서울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에 투자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문제 해결
문화콘텐츠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보유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
창업지원	원천기술 기반 첨단제조업 및 첨단 비즈니스 분야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혁신창업 활성화
재도전지원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패 후 재기도전하는 창업자에 투자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서울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라.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 모태조합 : 한국모태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마.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금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을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혁신성장펀드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도심제조업,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투자계정(경제정책과)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음.

- 혁신성장펀드는 2018년부터 5년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약 1조 4,310억원(서울시 출자분 1,921억원)을 투자할 예정임¹⁾

< 혁신성장펀드 연차별 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4,310 (1,921)	2,300 (130)	1,650 (232.5)	3,540 (483)	3,050 (473.5)	3,770 (602)
4차산업혁명	3,155 (315)	1,000 (35)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스마트시티	2,655 (310)	500 (30)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문화콘텐츠	1,000 (175)	200 (15)	150 (30)	180 (36)	200 (40)	270 (54)
창업지원	3,500 (521)	200 (30)	250 (42.5)	1,400 (168)	750 (127.5)	900 (153)
재도전지원	1,000 (250)	200 (10)	150 (45)	150 (45)	200 (60)	300 (90)
바이오	3,000 (350)	200 (10)	600 (50)	700 (90)	700 (90)	800 (110)

-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연구소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임.

¹⁾ 당초계획은 5년간 약 1조 2,310억원(서울시 출자분 1,711억원)을 조성해 2,218개의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에 창업지원 펀드와 바이오 펀드의 조성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서울시의 출자분 확대로 총 펀드 규모가 확대됨.

< 펀드별 투자조건 >

구 분	서울시 출자조건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 핀테크분야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50%이상 투자
스마트시티	- 도시·사회문제 해결솔루션 및 스마트시티조성 기술기반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 핀테크분야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50%이상 투자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 및 융합산업 관련 창업 7년 이내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프로젝트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창업지원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재도전지원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바이오	-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300%이상 투자

- 현재 혁신성장펀드 관리 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하게 됨.
- 올해 혁신성장펀드의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현재잔액 : 310억 6천 4백만원)에서 508억 5천만원을 출자해 모두 7,754억 5천만원의 펀드가 결성될 예정임(2021.7월 기준).

< 2021년 혁신성장펀드 추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문화 콘텐츠	창업 지원	재도전 지원	바이오
결성 예정액	7,754.5	952	765	700	2,387.5	700	2,250
서울시 약정액	508.5*	78	78	40	127.5	60	125

* 서울시 출자약정액 508.5억원 중 당초 계획액 473.5억원을 초과한 35억원(바이오 펀드)은 2020년 후반기에 선정한 운용사의 펀드 조성이 늦어지면서(2021.3월) 당초 2020년 투자약정액 483억원 중 448억원만 조성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35원) 약정액을 2021년에 반영한 것임.

다. 출자의 적정성

- 2022년도 혁신성장펀드의 출자규모는 602억원²⁾으로, 당초 계획 대비 50억원의 출자금이 증액되었음.
- 이는 바이오 분야의 조성목표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금도 증액(240억원→350억원)되었기 때문임(2020. 7월).

<바이오 분야 펀드 조성 목표 변경 내역 >

(단위 : 억원)

년도	기존		변경	
	목표액	서울시출자액	목표액	서울시출자액
총계	2,000	240	3,000 (+1,000)	350 (+110)
2018	200	10	200	10
2019	600	50	600	50
2020	400	60	700	90
2021	400	60	700	90
2022	400	60	800	110

※ 결성완료 : 980억('18년 200억, '19년 1,380억, '20년 1,162억)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K-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 조성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서울소재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자규모가 확대되었음.
-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과 치료제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있는 투자로 판단됨.

2) 4차산업혁명(97.5억원), 스마트시티(97.5억원), 문화콘텐츠(54억원), 창업지원(153억원), 재도전지원(90억원), 바이오(110억원)

- 혁신성장펀드는 정부·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서울 소재 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 확충과 함께 주요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직접 용자나 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소재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따라서 2022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자금 회수에 대비해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활용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역점분야에 대한 출자금을 상향하는 등 서울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664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민간과 공동으로 유망산업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
- 나.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펀드조성을 위한 기금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나. 추진방향

- 전문운용사를 활용하여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지원
-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활용

다. 출자의 필요성 : 코로나19의 여파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출자분야	출자 필요성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여 서울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에 투자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문제 해결
문화콘텐츠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보유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
창업지원	원천기술 기반 첨단제조업 및 첨단 비즈니스 분야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혁신창업 활성화
재도전지원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패 후 재기도전하는 창업자에 투자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서울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라.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 모태조합 : 한국모태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마.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금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옥창석 (☎2133-5224)